

『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5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노사 관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 근거 신설(안 제9조제1항)
-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,
 - 노사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, 정책과 집행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노사민정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조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생 략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